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4190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2208	정춘생의원	2024. 7.24.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4.11.1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3. 5.) 상정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9.22.)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4648	김한규의원	2024.10.10.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2.6.) ○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 2.19.) 상정·심사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9.22.)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9. 22.)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2025. 9. 24.)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등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오히려 수사기관이 더 높은 입증책임을 진다거나 처벌 대상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또한,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때가 이미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힐 경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규정에서 '알면서'를 삭제함(안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3호).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제4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를 “사용되는 자금ㆍ토지”로 한다.

제20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 ③ (생 략)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 ⑦ (생 략)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2. (생 략)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생 략) ②·③ (생 략)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신 설>	----------. 1.·2. (현행과 같음) 3. ---------- 사용되는 자금·토지----------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3. (현행과 같음) 4.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